

<p>요.</p> <p>○孫允準委員 事務處長님, 孫允準입니다.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. 事務處長으로 계시니까, 제가 말씀드릴게요. 저도 한번 합시다.</p> <p>○趙文晉委員 제가 끝난 다음에 해요. 이번에 大統領 서울市 巡視나오셨습니다. 나오셨는데 우리 서울市議會에서 議長포함 常任委員長 10名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, 그때 서울市에서 TO, 몇 名 參席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? 여기서 몇 名을 參席해야 되느냐 建議해서 내려왔습니까? 그것 말씀해 주세요.</p> <p>○事務處長 申星浩 그 쪽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.</p> <p>○趙文晉委員 그렇습니까? 그러면 事務處長님으로서 생각하실 적에는 서울市議會 議員 132名 中에서 常任委員長 이상 10名만 參席하게 되면 서울市議會 議員들의 位相이 定立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?</p> <p>○事務處長 申星浩 그것은 行主權催가 市니까 行主權催側에서 거기 여러 가지 行事와 관련해서 합당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曰可曰否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봅니다.</p> <p>○趙文晉委員 좋습니다. 그러면 事務處가 서울市와 서울市 行政府와 서울市議會 즉, 議會의 일을, 業務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서울市 行政府와 서울市議會의 중간 입장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입장정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느냐 하는 얘기죠. 答辯 못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. 됐습니다. 그러면 제 質問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.</p> <p>○孫允準委員 孫允準委員입니다. 지금 事務處長에게 一問一答하는 監査도 아니고 聽聞會도 아니니까 會議順序대로 進行을 하시고, 또 個人的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事務處長님께서서는 우리 議員들을 補佐하는데 補佐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 아닙니까? 그러면 그것 個人的으로 볼 때 있어야 하고 또 나도 그렇게 노력한다, 이렇게 答辯해 주시</p>	<p>면 되지, 이것을 구태여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.</p> <p>○事務處長 申星浩 제가 個人的으로 만났을 때는 제 나름대로 意見을 얘기를 했었습니다.</p> <p>○孫允準委員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, 그러면 答辯 끝나는 것으로 알고, 이것을 가지고 계속 遲遲不進하게 監査하는 것도 아니고 聽聞會하는 것도 아니니까 委員長님이 會議 進行順序대로 進行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委員長 金寅東 네, 알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</p> <p>여러 委員님들, 오늘 우리 議案外에 여러 가지 懸案이 있었던 問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質疑와 討論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이것은 提案說明에 대한, 또 檢討報告에 대한 여러가지 意見, 충분히 收斂되었다고 보고 일단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우선 質疑 討論이 더 없으신 것으로 알고, 그러면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查에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等에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 또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一括해서 原案 可決하고자 합니다. 異議없으십니까?</p> <p>(「異議 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그러면 전부 可決되었음을 宣布하겠습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-----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查에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</p> <p>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查에關한 條例中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第6條 第2項中 “議會事務局”을 “議會事務處”로 한다.</p> <p>第7條 第1項 내지 第3項中 “事務局長”을 “事務處長”으로 한다.</p>
--	---

附 則

이 條例는 公布한 날 부터 施行한다.

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等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

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等에 關한 條例中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第4條 및 第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4條(旅費) ① 議員이 會期中 議會의 會議(이하 "本會議"라 한다) 또는 委員會에 出席한 때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
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旅費는 국내여비, 국외여비, 회의참석여비 및 관내출장여비로 구분한다.

第7條(會議參席旅費 등) ① 議員이 會期中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參席한 때에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1의 현지고통비 全額으로 하고, 會期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.

②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서울特別市管内로出張 할 때에 지급하는 관내출장여비 또한 第1項의 規定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, 管内出張時 관용차량을 이용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附 則

이 條例는 公布한 날 부터 施行하되 1992. 1. 1부터 적용한다.

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措置條例中改正條例案

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中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第3條 第1項中 "議政課"를 "議政擔當官"으로, "議事課"를 "議事擔當官"으로 하며, 등조에

第3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사무처장 밑에 공보실을 두며 실장은 地方行政事務官으로 보한다.

第5條 내지 第10條를 각각 第6條 내지 第11條로 하고, 第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議會弘報에 關한 基本計劃의 樹立 및 執行
2. 議政活動의 弘報에 關한 事項
3. 出入記者 및 報道에 關한 事項
4. 圖書室의 運營 및 管理에 關한 事項

第6條(중전의 第5條)의 제명 및 본문 중 "議政課"를 "議政擔當官"으로 하고, 등條 第4號 중 "儀典 및 弘報"를 "儀典"으로 하며, 등條 第8號를 삭제한다.

第7條(중전의 第6條)의 題名 및 본문 중 "議事課"를 "議事擔當官"으로 한다.

第4條 관련(별 표)의 一般職 4級 정원란 "13"을 "14"로 하고, 등 定員 內용중 "地方書記官 또는 地方別定職 10"을 "地方書記官 또는 地方別定職 11"로 한다.

一般職 5級 정원란 "9"를 "12"로 하고, 등 정원內용중 "地方行政事務官 8"을 "地方行政事務官 11"로 한다.

一般職 6級 정원란 "15"를 "17"로 하고, 등 정원內용중 "地方行政主事 13"을 "地方行政主事 15"로 한다.

一般職 7級 정원란 "24"를 "26"으로 하고, 등 정원內용중 "地方行政主事補 22"를 "地方行政主事補 24"로 하며, 一般職 소계란 "68"을 "76"으로 한다.

技能職 10等級 "地方事務補助員(조무) 18"을 삭제하고, "地方事務補助員(필기) 4" 및 "地方衛生員(사역) 4"를 신설하며, "地方事務補助員(타자) 8"을 "地方事務補助員(타자) 18"로 하고, 총계란 "144"를 "152"로 한다.

附 則

이 條例는 公布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○委員長 金寅東 委員 여러분, 수고 많으셨